

정 관

제 정 : 1970. 9.16

개 정 : 1971. 8. 9 1971.11.23
1972. 1. 4 1973. 9.24
1973.12. 1 1974. 1.25
1974. 7. 2 1975. 5.14
1975. 8.28 1975. 9. 9
1977. 7.22 1978. 2.27
1980. 3.31 1980. 4.30
1981. 2.26 1982. 2.26
1982. 5.14 1983. 9.14
1983.12.22 1984. 5.29
1984. 7.20 1985. 5.11
1986. 5.20 1987. 5.23
1988. 5.28 1989. 5.20
1990. 5.26 1991. 5.25
1996. 5.25 1997. 5.31
1998. 5.31 1999. 5.29
2000. 5.27 2001. 5.26
2002. 6. 1 2003. 6.17
2004. 6.11 2005. 5.27
2006. 5.26 2008. 6. 5
2009. 6. 5 2010. 6. 1
2012. 6.29 2013. 6.21
2015. 3.27 2016. 3.25
2016. 5.13 2016.12.30
2019. 3.27 2021. 3.24
2023. 3.2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MIRAE ASSET SECURITIES CO., LTD.라 표기한다. <개정 2021.03.24>

제 2 조 (목적)

- ①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6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 가. 투자매매업
 - 나. 투자중개업
 - 다. 집합투자업
 - 라. 투자자문업
 - 마. 투자일임업
 - 바. 신탁업
 2. 「자본시장법」 제 40 조 및 제 41 조에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3. 제 1 호 또는 제 2 호 외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및 기타 별도의 인가·허가·등록을 받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업무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
- ② 회사는 제 1 항의 업무 이외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및 기타 별도의 인·허가를 얻거나 등록·신고 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지점, 영업소, 사무소, 출장소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21.03.24>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 억주로 한다.

제 6 조 (1 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 주의 금액은 5,000 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그 발행주식의 수는 제 8 조 내지 제 8 조의 6 에서 정한 1 종 내지 6 종 종류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과 법령상 달리 허용되는 한도 중 높은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한다.

제 8 조 (무의결권 배당우선 영구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1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영구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정할 신주의 종류 및 내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의 2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2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 8 조 제 2 항 내지 제 6 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 이상 50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④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⑤ <삭제 2021.03.24>

제 8 조의 3 (의결권제한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3 종 종류주식은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1. 이사의 선임·해임
 - 2.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 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중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사항
-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제 8 조 제 2 항 내지 제 6 항, 제 8 조의 2 제 3 항 및 제 4 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24>

제 8 조의 4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4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 8 조 제 2 항 내지 제 6 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24>

-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 2. 전환조건 및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 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4. 다음 각 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종류주식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가. 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보다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 나. 종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 미만인 경우
 - 다. 기타 적대적 M&A 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경우
- ④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

제 8 조의 5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5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 8 조 제 2 항 내지 제 6 항을 준용한다.
-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1. 상환조건 및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20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 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 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조건 및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20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 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 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 8 조의 6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

- ① 회사가 발행할 6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신주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종류주식의 전환, 전환기간의 연장, 종류주식의 상환,

상환주식 취득의 대가에 대해서는 제 8 조 제 2 항 내지 제 6 항, 제 8 조의 4 제 3 항 및 제 4 항, 제 8 조의 5 제 3 항 내지 제 5 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24>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와 상환권 행사 간에 상호 우선순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 <삭제 2019.09.16>

제 9 조의 2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09.16>

제 10 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제 4 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 161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같은 법 제 163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가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또는 법령상 달리 허용되는 한도 중 높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등기이사를 제외한 직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 3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 (「상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7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8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3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⑧ <삭제 2021.03.24>
 - ⑨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자로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 3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제 44 조 제 2 항에서 정한 날 및 제 45 조 제 1 항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개정 2021.03.24>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3.24>

제 12 조 <삭제 2019.09.16>

제 12 조의 2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1.03.24>
- ②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24>
- ③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03.24>

제 13 조 (기준일)

- ① <삭제 2021.03.24>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4>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21.03.24>

제 14 조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 조 2 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경우 회사는 행사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21.03.24>

제 15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09.16, 2021.03.24>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 11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9.09.16>

제 4 장 주주총회

제 17 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
- ②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

제 29 조 (이사의 수)

-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 ②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2 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9.03.27>

- ④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3.24>

제 30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의 2 (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1 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임기는 이사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29 조에서 정하는 이사의 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9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3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1 인 이상 선임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회사업무를 통할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의 2 <삭제 2016. 11. 4.>

제 34 조의 3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사회 의장)

- ① 회사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써 사외이사 중 1 인을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의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 ④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6 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4 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7 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7 조의 2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및 그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8. 기타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제 3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 393 조 제 1 항에 따른 이사회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제 38 조의 2 에 따른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8 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 조의 2 (위원회)

-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 ② 회사는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위원회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6 조, 제 37 조 및 제 3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 39 조 (이사의 보수)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정하거나 그 결의로 이사의 보수(급여·상여 등)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별도의 규정으로 채택할 수 있다.
- ② 퇴직공로금 및 퇴직급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39 조의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 (경업금지), 제 397 조의 2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0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 명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 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지배구조법」 제 19 조 제 10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⑦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⑨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1.03.24>

제 40 조의 2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9.03.27>
-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40 조의 3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4 (상근감사위원)

감사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감사담당부서에 대한 원활한 지휘 및 감독을 위하여 상근감사위원(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에 한한다)을 둘 수 있다.

제 7 장 계 산

제 41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서류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7>

제 43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3 조의 2 삭제 <2016. 11. 4.>

제 44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23>
- ③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이익배당의 지급을 통지받은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미지급된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5 조 (중간배당)

- ① 회사는 사업연도 중 1 회에 한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 조의 3 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23>
-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③ <삭제 2021.03.24>

제 45 조의 2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6 조 (보칙)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상법」,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 8조 제 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8조, 제 24조의 2, 제 29조, 제 30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 1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
- ②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 36조 및 제 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회사가 개정 전의 정관에 따라 이미 발행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러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이 정관의 시행일 이후에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 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된 자는 제 32조 제 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증권거래법 시행(2001년 4월 1일) 당시 증권거래법 제 1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 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제 30 조의 2 제 1 항 및 제 31 조 제 1 항은 이 정관 시행 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정관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이 정관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 31 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9 조 제 1 항의 개정조항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 변경되는 이사 보수 결정시부터 적용하며, 제 13 조 및 제 41 조의 개정내용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에 따라 2013년도에 한해 사업연도를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제 2 조(종류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 8 조, 제 14 조의 2 및 제 14 조의 3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우선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이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 31 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이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 년 5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 년 12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종류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 8 조 내지 제 8 조의 6, 제 14 조의 2 및 제 14 조의 3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종류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9 조, 제 9 조의 2, 제 12 조, 제 15 조, 제 16 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4 조 개정내용은 2023 년 회계연도(제 55 기) 결산배당부터 적용한다.